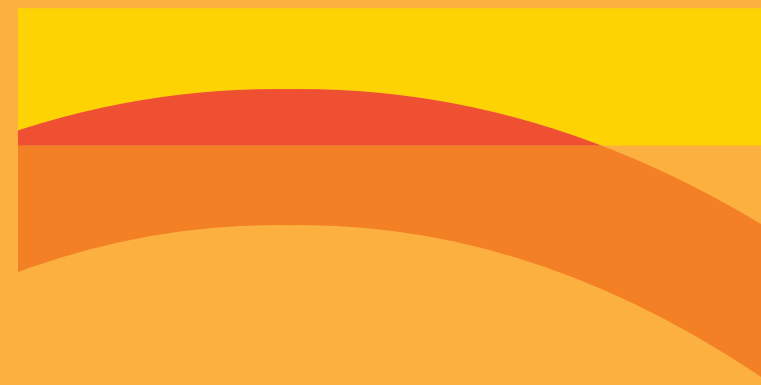


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



03

01 언론분쟁 관련 전문 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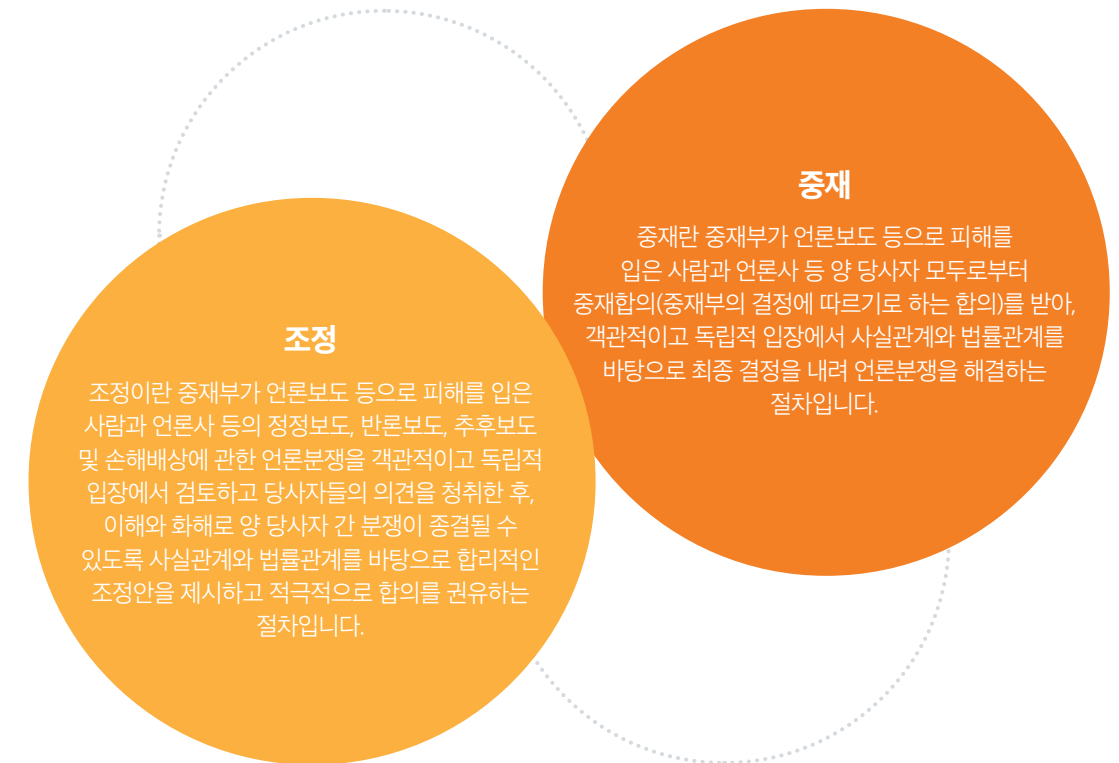


- 숙련된 전문 상담원이 언론분쟁 관련 전반에 대해 원스톱(one-stop)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
- 언론중재위원회 전문 상담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상담 이용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언론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, 언론조정·중재 절차 전반(신청 방법, 신청서 작성, 신청서 접수 처리) 등에 관한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담은 무료이며, 위원회 직접 방문, 유선전화, 이메일이나 누리집 내의 1:1 문의 등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이 가능합니다.

언론 피해 상담

방문: 서울사무처(프레스센터15F 접수상담팀) 및 지역사무소
대표전화: (02)397-3000
이메일: counsel@pac.or.kr
누리집: <https://www.pac.or.kr>

02 언론분쟁 조정 및 중재



- '언론조정·중재제도'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복잡한 법원 재판 절차에 비해, 어떠한 비용 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- '언론조정·중재제도'는 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을 언론분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재부가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여 언론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인 만큼, 당사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언론조정·중재 신청요건 및 청구의 종류

| 신청 대상 매체

신문, 방송,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, 인터넷신문,
인터넷뉴스서비스(포털),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(IPTV)

| 신청인

언론보도*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, 일반단체나 공공기관, 회사, 지방자치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(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)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.

| 신청 기간

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,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단, 추후보도청구는 형사 절차가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함(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). '사실적 주장'이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, 언론사의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보도는 해당하지 않음

| 청구의 종류

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정정보도청구, 반론보도청구, 추후보도청구,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.

피해자는 각 청구들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(예, 정정보도청구+손해배상청구), 조정절차 중에 청구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

① 정정보도청구

언론보도 등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, 보도를 한 언론사 스스로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 기사를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정정보도문의 예

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 <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> 제하의 기사에서 “A 주식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됐다”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주식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동결가공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바로잡습니다.

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② 반론보도청구

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
반론보도문의 예

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 <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> 제하의 기사에서 “A 주식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동결가공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됐다”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대해 A 주식회사는 해당 동결가공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, 가공제품 기준치에 미달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.

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③ 추후보도청구

언론사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, 해당 언론사 등에 이 사실(무죄 또는 무혐의 받은 사실)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추후보도문의 예

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 <A씨 음주운전> 제하의 기사에서 "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"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.
그러나 최근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
④ 손해배상청구

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손해배상합의문의 예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

언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절차



※ 정정·반론·추후·손배 청구 모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거나,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

언론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

| 언론조정신청 방법

① 서면에 의한 신청

- 언론조정신청서 양식*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대상 매체 및 보도 일시 등을 기재하고, 정정보도, 반론보도,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세한 이유와 요구하는 보도문 및 손해배상액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은 언론조정신청서 제출 시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조정대상기사 본문을, 방송의 경우, 조정대상보도 녹음·녹화물과 녹취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(포털)인 경우, 해당 기사의 URL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②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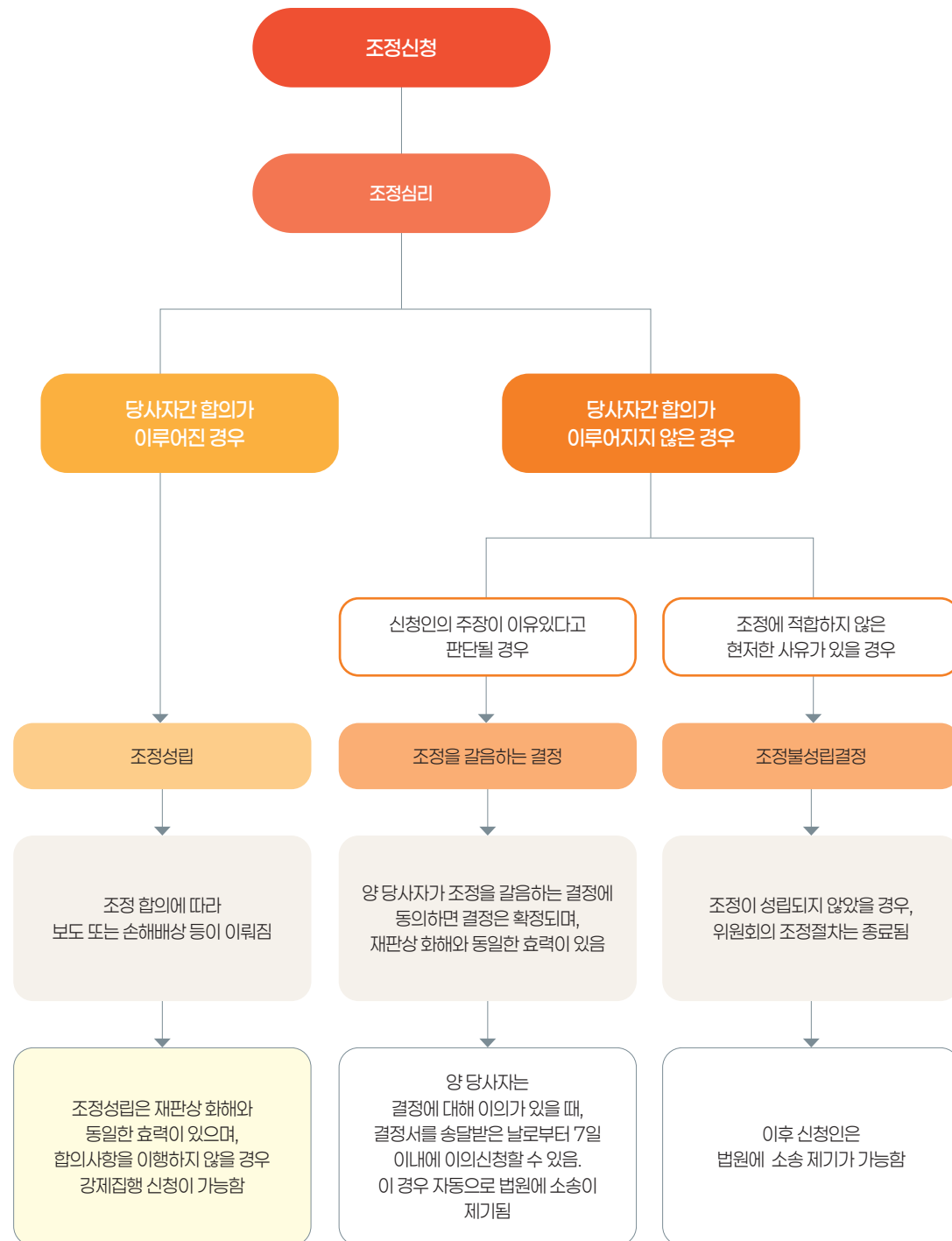
- 위원회 누리집(<https://www.pac.or.kr>)에 접속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누리집 내의 언론피해구제절차>조정신청방법 메뉴에서 '전자신청'을 클릭한 후 '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'에 동의하고 '휴대폰 인증'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- 상담 및 접수 전용 이메일(counsel@pac.or.kr)을 통해서도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③ 구술에 의한 신청

- 위원회 전문 상담 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진술하여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언론조정 및 중재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 누리집(<https://www.pac.or.kr>)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조정과 중재의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 흐름도



- 조정신청이 접수되면,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.
- 조정기일에 신청인,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가 열립니다.
 -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심리에 출석합니다.
 -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,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, 위임장과 조정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.
 -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 다만,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.
- 심리석상에서 중재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,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.
- 조정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.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직권조정 결정)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
언론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효력

① 조정성립

-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, 반론보도, 추후보도, 손해배상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.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.
- 조정성립이 된 이후에 언론사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신청인은 법원을 통해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직권조정결정)

- 당사자 간의 조정성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,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담당중재부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보도, 반론보도, 추후보도,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직권조정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조정성립과 마찬가지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다만,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,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신청인은 원고가 되고, 피신청인인 언론사 등은 피고가 됩니다.

③ 조정불성립결정

- 중재부는 당사자 간의 조정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지면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되며,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④ 기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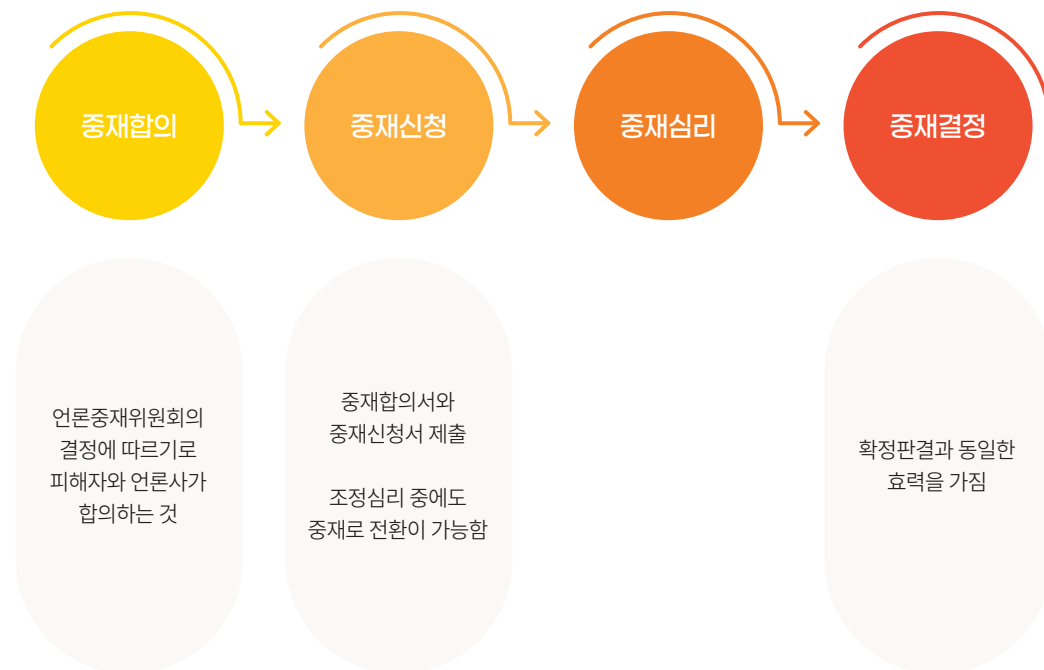
-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중재부가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,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,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.

⑤ 각하

-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(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, 보도일로부터 6개월)을 넘겨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중재부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.

언론중재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, 효력

- 중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신청인과 언론사 등(피신청인) 사이에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며,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면(중재합의서)을 언론중재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-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 등은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, 반론보도문, 추후보도문을 보도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언론사 등이 그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의 신청 요건(신청인자격, 신청 대상 매체, 신청 기간 등)은 조정절차와 동일합니다.



03 시정권고

| 개인적, 사회적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

- 언론중재위원회는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,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개인이나 사회,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- 시정권고소위원회는 「헌법」을 비롯하여 「형법」, 「가사소송법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소년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, 「통신비밀법」,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을 토대로 한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을 마련하여 시정권고 결정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- 시정권고 심의의 대상이 되는 법익 침해 보도로는 사생활 공개 / 명예훼손 / 범죄 관련자(피해자, 피의자, 피고인, 목격자 등)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사건 관련자 신원 공개/인증, 국적, 지역, 성별, 육체적·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편견적 또는 차별적·경멸적 표현 / 마약 및 약물 관련 상세 보도(구체적인 용법 및 용량 기재 등) / 자살 관련 상세 보도(장소 공개, 자살 방법 등) 등이 있습니다.
-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의 전달과 함께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사가 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합니다. 시정권고는 권고적 조치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.

04 선거기사심의

|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

- 언론중재위원회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(대통령선거, 국회의원 및 전국동시지방선거) 및 재·보궐선거 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*합니다.
-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거나 후보자가 시정을 요구한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정정·반론보도문, 경고결정문·주의사실 게재 또는 주의·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- 또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나 정당의 반론보도청구를 언론사가 거부하여 그 청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, 48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합니다.



*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,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(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)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.

05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,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

|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①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

- 언론사, 국가·공공기관, 지자체, 기업, 대학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.
-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다양한 언론조정 사례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격권의 유형, 언론분쟁 사례와 해결방안,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.
- 10명 이상의 단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, 위원회 내방 및 출장교육 모두 가능합니다.

② 연수프로그램

언론인, 예비 법조인, 대학생,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함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강의를 제공합니다.

- 언론인 전문 연수: 언론분쟁 예방을 위하여 취재·보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저널리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지역 언론인 워크숍: 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언론인 대상 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.
- 예비 법조인 연수: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대학생(예비 언론인) 연수: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과 함께 현직 언론인 등으로부터 미디어 현장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 언론중재스쿨: 청소년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강의, 견학 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
- 맞춤형 위탁 연수: 기관 및 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
- 일반인 연수: 위원회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언론피해구제 교육과 함께 미디어 관련 외부 초빙강사 교육을 제공합니다.
-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: 정당(하부조직 포함), (예비)후보자,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선거기사 심의·의결 절차와 심의기준 및 주요 사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.

③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합니다.

-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이해도를 높이고,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연 1회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- 언론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(원)생은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습니다.
- 대회는 언론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모의조정 시나리오 심사, 모의조정 경연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.

교육신청 및 문의

교육신청: 위원회 누리집(<https://pac.or.kr>) > 언론중재아카데미

교육문의: 02-397-3062





06 언론법제 학술 연구

|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연구 및 지원활동 실시

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분야 연구 활성화 및 학술 진흥, 연구지원을 위해 각종 학술전문서적 발간, 학술토론회 개최, 자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위원회가 발간하는 다양한 학술자료는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① 학술전문서적 기획·발간

- 언론법제, 표현의 자유, 인격권,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에 관한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창구인 등재학술지 <미디어와 인격권> 발간을 통해 언론법제 관련 분야 학술연구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(연 3회 발간).
- 계간 <언론중재> 기획 및 발간을 통해 언론법제 관련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이슈,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(연 4회 발간).
- 한 해 동안의 언론관련판결들을 수집·분석·정리한 <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> 발간을 통해 국내 언론관련 소송의 경향 및 적용법리,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(연 1회 발간).
- <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> 발간을 통해 해외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언론법제 관련 현황, 주요 이슈, 시사점 등을 파악, 제공하고 있습니다(연 1회 발간).

② 학술토론회 개최

- 미디어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언론법제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언론계, 법조계, 학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.

③ 학술연구자료실 운영

- 5천여 권에 이르는 장서와 각종 전문 학술 간행물을 보유한 자료실 운영을 통해 언론법제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